

재벌도 못 들어간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촌극'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16)



정재욱

변호사  
기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노동법)

『경력사항』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법 커뮤니티위원장
- (사)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 학술이사
- 주간조선,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외부필진으로 활동 중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가상자산 시장에 뉴페이스는 들어올 수 없다. 삼성, 현대, LG 등 유수의 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뛰어들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돈이 아닌 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규제 체계로 인해 2021년 9월 25일 이전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 규제의 충돌로 인해 그 어떠한 기업도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가 기간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 1. 신고 없이 영업하지 말라

작년 3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 신고제’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영업적으로 하려면 이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 일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법 해석상 여기서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단순히 신고만 했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일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 요건이다.

정부(금융정보분석원장)는 (1)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즉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ISMS를 획득하여 (1) 요건이 충족되지만, 은행과 협의가 잘 안되어 (2)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화마켓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거래소 원화마켓, 코인마켓을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ISMS, 실명확인 계좌 모두 있어야 하고, 코인마켓만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ISMS만 있으면 된다. 물론 어떠한 경우가 되든 ISMS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도 운영할 수도 없다.

## 2. 신고하려면 2개월간 운영실적 갖고 와라

문제는 ISMS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2개월간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ISMS 인증을 취득하

고자 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요컨대 신고 수리 없이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데, 신고 수리를 받으려면 2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게 현 규제 핵심이다. 이런 법 규정하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답이 가능하다.

정부: “허가 없이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 “2개월간 운영하신 실적 가지고 오세요.” “아, 신고 수리 안 된 상태에서 영업하시면 형사처벌 받으시니 유의하시고요.”

정리하면, 신규 사업자로 ISMS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미 2개월 이상 거래소 운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9월 25일 전면 시행된 이후에는 신고 수리 없이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정 자체로 모순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이,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다 보니 생긴 규제 해프닝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론적으로 ‘운영’이란 영업적 운영, 비영업적 운영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영업적 목적으로 시험 운영을 하면 ISMS 인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영업적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ISMS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없지는 않다.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끝낸 거래소를 찾아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기존 사업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일종의 규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만들어준 규제 독과점의 혜택이 현실화되고 있다.

11.3조원. 국내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규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1~3분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총영업이익은 약 3.4조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데 신규 사업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기존 거래소들의 몸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예비 ISMS

정부도 이러한 모순점을 알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ISMS 인증을 예비 발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이전이라도 ISMS 심사 항목 중 일정 부분을 충족하면 예비 ISMS 인증을 부여하고, 예비 인증만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며, 신고 수리 이후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사업자는 ISMS 본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공여지책으로 생각된다.

(출처/주간조선)